한국환경회의 ·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일 자	2018. 9. 17(월)	담당자	송화원 (환경정의, 010-3331-8078)
수 신	각 언론사 정치, 사회, 환경, NGO 담당기자		
제 목	**[보도자료] 박원순시장 그린벨트 해제요청 거부 촉구 기자회견 및 의견서 전달(8매)**		

[긴급 기자회견]

박원순 시장은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 요청 거부하라!

- 일시/장소: **9월17일(월) 오전 11:00, 서울시청 앞**
- 주최: 한국환경회의, 경실련도시개혁센터
- 내용:

(1) 취지 및 경과
(2) 규탄 발언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 남은경 경실련 토지개혁센터 팀장,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3) 의견서 낭독
(4) 박원순 서울시장 의견서 전달

※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검토 철회 의견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도 전달될 예정입니다.

1. 한국환경회의를 비롯한 시민·환경단체들은 주택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서울 집값 안정을 이유로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정부의 발표 직후,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 각 층에서 실효성 없는 그린벨트 해제 검토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 이러한 요구를 묵살한 채, 지난 9월 13일 정부는 그린벨트 지역 등 수도권 30곳에 아파트 30만호를 짓는 방안을 21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즉각 '협의한바 없음'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양새입니다.

3.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아파트를 공급하는 정책은 집값 안정 효과는 없고 주변지역의 투기만 조장해왔습니다. 투기세력의 배만 불려온 아파트 건설을 위해 얼마 남지 않은 수도권녹지마저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수도권 그린벨트는 과도한 도시화와 폭염 등 지구온난화에 맞서는 마지막 보루이자 도시의 생명벨트이기 때문입니다.

4. 이에 주요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와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정부의 아파트 건설 목적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검토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합니다.

◎ 별첨
1. 기자회견문(총 2매).
2.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검토 철회 촉구 의견서(총 5매)

2018년 9월 17일

한국환경회의 ·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기자회견문]

박원순 시장은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 요청 거부하라!

○ 정부는 지난 8월 27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등을 통한 시장안정대책을 발효하였다. 기 발표된 14곳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7.571㎢을 해제해 62,040 호 개발계획은 물론 2022년까지 서울의 개발제한구역을 포함, 수도권에 30만호 이상의 추가공급이 가능한 30개의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의 집값 안정 효과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도시지속가능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가져오는 도시연담화나 인구 과밀화문제, 지역균형발전을 도외시하며 개발제한구역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 지난 100년 간 서울의 연평균 기온은 2.4℃가 상승했다. 세계 평균의 3배다. 올여름 서울의 최고기온은 39.6℃로 111년간의 기상 관측 이래 최고기록을 세웠다. 온열질환자 수는 613명으로 지난해 106명에 비해 5.8배나 늘었다.

○ 서울의 인구밀도는 뉴욕보다 2.3배, 런던의 3배, 도쿄의2.5배, 베를린의 3.9배 등 해외 메가시티의 두 배, 네 배에 이른다. 더욱이 잦은 신도시 개발과 개발제한구역해제로 수도권이 확대되면서 통근 통학 거리가 확대대어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서울의 초미세먼지는 파리, 런던, 동경의 오염수준의 2배 이상이다.

○ 인구집중은 도시의 과밀개발을 초래한다. 이로 인해 증가된 불투수면적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맞물려서 도심 저지대 홍수를 유발하고 빗물이 땅에 흡수되지 않고, 우수관을 거쳐 방출되면서 지하수 수위를 낮춰 싱크홀 발생의 단초를 제공한다. 또는 빗물이 도로의 틈을 통해 지하수길이 아닌 곳에 스며들어 노후된 하수관거나, 지하공사 등과 잘못 연계되면서 싱크홀을 유발하기도 한다. 실제 2017년 기준 최근 4년간 전국 지역별 싱크홀 발생현황 중 서울시가 2960건(81.7%)으로 가장 높다. 해외에서도 주로 도시에서 싱크홀이 발생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다.

○ 녹지 잠식도 심각하다. 세계 3주요 도시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독일 베를린 27.9㎡, 영국 런던 27.0㎡, 캐나다 밴쿠버 23.5㎡, 미국 뉴욕 23.0㎡, 프랑스 파리 13.0㎡, 중국 베이징 8.7㎡이다. 서울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5.3㎡에 불과하다. 서울 인근 수도권의 인천이 7.56㎡, 경기도가 6.62㎡로 형편은 비슷하다.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1인당 도시공원 최소기준인 9㎡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조차도 도로 등 타 기반시설과 달리 중앙정부의 지원이 전무해서 도시공원의 절반 이상이 해제 위험에 놓여있고, 도시공원에 아파트개발을 허용하는 민간특례사업으로 전국은 지금도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하물며 엎친데 덮친 격으로 그린벨트까지 헐어 대규모 아파트를 짓도록 하는 건 정말이지 심각한 문제다.

○ 도시 숲은 도심보다 최대 3~7℃까지 기온이 낮다. 도시의 열병을 예방하는 최후의 방어기제인 셈이다. 도시 숲은 여름철 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태양에너지의 90%까지를 차단

해, 실내온도를 약 11℃ 낮추고, 가구당 8~12%의 냉난방 비용을 줄여준다. 이에 따라 생활권 도시림이 1인당 1㎡ 증가하면 전국 평균 소비전력량은 0.02MWh 감소하게 되고 특별시·광역시 내의 여름철 한낮 온도를 1.15℃ 감소시킨다. 한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서울 홍릉 숲에서 보름 이상 측정한 바에 따르면 홍릉 숲은 2㎞ 떨어진 도심의 부유먼지 25.6%, 미세먼지 40.9%를 줄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세먼지의 자연 방패가 도시 숲인 것이다.

○ 그린벨트는 정부의 각종 개발사업 수요 충족을 위한 손쉬운 토지 공급처가 되었다. 김대중•노무현정부의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제2기 신도시건설, 이명박정부의 보금자리주택, 박근혜정부의 상업•공업용도 허용과 30만제곱미터 이하 공공택지 지정권한이 지자체에 이양되면서 정부가 사실상 그린벨트 해제와 훼손에 앞장서 왔다.

○ 지난 정부 판교와 위례 등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신도시 주택공급정책은 투기꾼과 건설업자의 배만 불릴 뿐 서민주거안정과 집값 안정에는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났다. 그런데 문재인정부가 지난 40여 년 간 수도권의 허파 기능을 위해 녹지공간으로 지켜온 그린벨트를 추가 해제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은 그린벨트 보전과 관리라는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고, 투기 조장 정책을 반복하는 것이다. 집값과 서민주거 안정에 효과가 없는 그린벨트 훼손 신도시건설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에 한정해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던 취지는 퇴색된 채 대부분 로또 민간분양주택 건설을 위해 그린벨트가 훼손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지속적으로 후퇴했다.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한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절반 이상 짓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이후 신도시 건설 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은 20% 내외로 후퇴했고,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과 대부분 민간 분양주택으로 채워졌다.

○ 개발제한구역제도는 도시확산과 자연녹지, 농촌지역보호를 목적으로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도시 전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경제적 효용성을 높이는 도시성장관리정책으로 사용하고 있고, 호주의 수도 캔버라의 경우 도시주변 자연경관 보호만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관광 위락공간으로서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파리시 외곽지역에 자연균형지역이라는 명칭으로 제도가 운영 중이다. 러시아도 모스크바주변 폭16㎞의 그린벨트가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운영 실패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제도가 폐지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대로 개발제한구역제도를 운영한다면 일본처럼 해제위기에 놓일 수 밖에 없다. 박원순 시장은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요청을 거부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그린벨트 훼손이 아닌 정공법을 통해 부동산 해법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한국환경회의·경실련도시개혁센터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검토 철회 촉구」 의견서

1 서울시 지속가능성이 먼저다

○ 지난 100년 간 서울의 연평균 기온은 2.4℃가 상승했다. 세계 평균의 3배다. 올여름 서울의 최고기온은 39.6℃로 111년간의 기상 관측 이래 최고기록을 세웠다. 온열질환자 수는 613명으로 지난해 106명에 비해 5.8배나 늘었다.

○ 서울의 인구밀도는 뉴욕보다 2.3배, 런던의 3배, 도쿄의2.5배, 베를린의 3.9배 등 해외 메가시티의 두 배, 네 배에 이른다. 더욱이 잦은 신도시 개발과 개발제한구역해제로 수도권이 확대되면서 통근 통학 거리가 확대대어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서울의 초미세먼지는 파리, 런던, 동경의 오염수준의 2배 이상이다.

○ 인구집중은 도시의 과밀개발을 초래한다. 이로인해 증가된 불투수면적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맞물려서 도심 저지대 홍수를 유발하고 빗물이 땅에 흡수되지않고, 우수관을 거쳐 방출되면서 지하수 수위를 낮춰 싱크홀 발생의 단초를 제공한다. 또는 빗물이 도로의 틈을 통해 지하수길이 아닌 곳에 스며들어 노후된 하수관거나, 지하공사 등과 잘못 연계되면서 싱크홀을 유발하기도 한다. 실제 2017년기준 최근 4년간 전국 지역별 싱크홀 발생현황 중 서울시가 2960건(81.7%)으로 가장 높다. 해외에서도 주로 도시에서 싱크홀이 발생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다.

○ 녹지 잠식도 심각해 세계 3주요 도시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독일 베를린 27.9㎡, 영국 런던 27.0㎡, 캐나다 밴쿠버 23.5㎡, 미국 뉴욕 23.0㎡, 프랑스 파리 13.0㎡, 중국 베이징 8.7㎡이다. 서울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5.3㎡에 불과하다. 서울 인근 수도권의 인천이 7.56㎡, 경기도가 6.62㎡로 형편은 비슷하다.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1인당 도시공원 최소기준인 9㎡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조차도 도로 등 타 기반시설과 달리 중앙정부의 지원이 전무해 도시공원의 절반 이상이 해제 위험에 놓여있고, 도시공원에 아파트개발을 허용하는 민간특례사업으로 전국은 지금도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하물며 엎친데 덮친격으로 그린벨트까지 헐어 대규모 아파트를 짓도록 하는 건 정말이지 심각한 문제다.

○ 도시 숲은 도심보다 최대 3~7℃까지 기온이 낮다. 도시의 열병을 예방하는 최대의 방어기제인 셈이다. 도시 숲은 여름철 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태양에너지의 90%까지를 차단해, 실내온도를 약 11℃ 낮추고, 가구당 8~12%의 냉난방 비용을 줄여준다. 이에 따라 생활권 도시림이 1인당 1㎡ 증가하면 전국 평균 소비전력량은 0.02MWh 감소하게 되고 특별시·광역시 내의 여름철 한낮 온도를 1.15℃ 감소시킨다. 한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서울 홍릉 숲에서 보름 이상 측정한 바에 따르면 홍릉 숲은 2㎞ 떨어진 도심의 부유먼지 25.6%, 미세먼지 40.9%를 줄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세먼지의 자연 방패가 도시 숲인 것이다.

2 실패한 그린벨트 정책의 위기

○그린벨트제도는 1971년 도시의 합리적인 관리와 무분별한 도시팽창을 방지하고 미래세대가 쓸 수 있는 유보지를 남기기 위해 개발을 전면 금지하는 녹지공간을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다. 보상도 없이 과도한 사유재산권 제한이라는 비판에 따라 김대중정부가 기존 취락지와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제한적으로 해제 수 있는 길을 열면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사실상 정부의 개발벨트로 전락했다.

○ 개발이 허용된 그린벨트는 정부의 각종 개발사업 수요 충족을 위한 손쉬운 토지 공급처가 되었다. 김대중•노무현정부의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제2기 신도시건설, 이명박정부의 보금자리주택, 박근혜정부의 상업•공업용도 허용과 30만제곱미터 이하 공공택지 지정권한이 지자체에 이양되면서 정부가 사실상 그린벨트 해제와 훼손에 앞장서 왔다.

○ 문재인 정부도 수도권 14곳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7.571㎢에 62,040 호수를 개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3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규모의 공공택지 30개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중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도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부의 주택공공급정책은 이미 22년까지 수도권과 서울의 신규주택수요를 넘는 공급정책이 추진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단지, 수질오염의영향이 적은 농경지는 보존가치가 낮다는 불합리한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인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가져오는 도시연담화나 인구 집중 등을 통한 도시과밀화문제 지역균형 발전을 도외시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표 2-9>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현황(2016년 말 기준) (단위: km^2)

구분	당초지정 (1970년대) A	기해제 면적 (2006~2016) B	2016말 기준 지정면적 C	해제총량 소진 시 잔여면적 G(=C-F)	2020년 광역도시계획		
					해제가능 총량 D	기해제 면적 E	잔여총량 F(=D-E)
전국	5,397,110	1,543,203	3,853,907	3,626,214	531,555	303,862	227,693
대도시권	4,294,020	440,113	3,853,907	3,626,214	531,555	303,862	227,693
수도권	1,566,800	155,703	1,411,097	1,316,567	239,003	144,473	94,530
서울	167,920	17,137	150,783	148,327	14,608	12,152	2,456
인천	96,800	8,526	88,274	86,905	9,096	7,727	1,369
경기	1,302,080	128,346	1,173,734	1,125,666	135,499	87,431	48,068
국책사업	-	(37,163)	-	-42,637	49,800*	37,163	42,637

* 수도권 국책사업: 서민주택공급 78.8km^2, 경인운하 1.0 km^2

출처 : 국토연구원, 광역적 도시공간구조를 고려한 개발제한구역 중장기 관리방안 연구, 2017년, p.26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해제현황 통계(2016년 말 기준)

- 해제총량제의 운영 경과

- 1971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이후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상당한 규제와 개별적 완화가 반복되어 오다, **2001년 제정된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 의해 수립된 6개 도시권별 광역도시계획에서의 환경평가 결과**에 따라, 도시별 행정구역 면적 대비 개발제한구역 면적 비율 등을 감안하여 권역별로 해제총량을 부여하게 되었음.

= 1차 해제총량은 이미 해제된 중소도시권의 면적을 제외하고, 개발제한구역 총 4,294㎢ 중 342.8㎢(7.98%)를 해제가능지역으로 설정

= 또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을 개념도로 제시하고, 계획적 개발수요가 있을 경우 도시계획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해제하도록 하였음.

- 2008년 11월에 개정된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서는,

= 첫째, 기존의 해제계획에 따라 해제하기로 한 면적 중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는 해제 예정지는 해제총량을 활용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집단화하였고,

= 둘째, 지역별 개발수요 및 가용토지 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하다는 사유로 188.7㎢ 범위로 추가 해제함으로서, 2차 해제총량 설정을 허용하였음. 또한, 권역별 해제예정 총량의 10~30% 범위 내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규모를 설정하도록 하고, 서민주택 건설을 위한 부지(80㎢)와 국정과제 추진지역(부산 강서, 6㎢)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하되 **면적을 별도로 인정**하였음.

= 셋째, 광역도시계획에 의해 **해제가능지역 위치표시 없이 해제가능 총량만 부여**

= 넷째, 해제지역은 주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저탄소 녹색주거단지 및 산업연구단지를 설치하도록 함.

- 2009년 4월에 개정된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서는,

=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총량을 시·도별로 배분·제시**하되, 도지역 내 시·군에 대하여는 시·군별로 배분·제시하거나 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한 권역을 설정하여 해제가능 총량의 범위 내에서 상·하한 범위형태로 배분**·제시

= 서민주택공급 건설계획 등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권역별 해제가능 총량만 제시**

= **국가계획의 시행을 위한 부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대도시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면적을 별도로 설정** 가능하도록 하여, 보금자리주택, 부산국제물류단지 1단계, 위례 신도시 등 국책사업과 지자체 현안사업, 4대강 사업에 따른 친수구역 등으로 272㎢를 해제함.

- 2009년 8월에 개정된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서는,

= 해제가능총량 설정한도와 관련하여, ①최초로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에서 반영된 권역별 해제가능 총량의 10~30% 범위 내에서 적정수준을 설정하고, ②국가계획의 시행을 위한 부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대도시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면적을 별도로 설정하며, ③부산권은 이명박정부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두바이형 Port-Business -Valley 조성사업을 위해 ①항에 의하여 활용가능한 면적 외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필요면적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설정** 가능

- 이에따라, 2016년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970년대 **당초 지정면적 대비 약 29%(1,543㎢)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으며, '2020년 광역도시계획' 상의 해제가능총량(532㎢)은 약 57%(304㎢)가 소진**된 상태임.

= 또한, 개발제한구역이 유지되고 있는 7대 대도시권의 해제면적은 총 440㎢이며, 이 중 약 약

3/4에 해당하는 면적이 수도권(156㎢)과 부산권(179㎢)에서 해제되었음(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해제현황 통계, 2016년말 기준).

3 무늬만 공공임대주택 건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최소한의 개발명분도 없는 사실상 투기주택 공급사업이다.

○ 지난 정부 판교와 위례 등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신도시 주택공급정책은 투기꾼과 건설업자의 배만 불릴 뿐 서민주거안정과 집값 안정에는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났다. 그런데 문재인정부가 지난 40여 년 간 수도권의 허파 기능을 위해 녹지공간으로 지켜온 그린벨트를 추가 해제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은 그린벨트 보전과 관리라는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고, 투기 조장 정책을 반복하는 것이다. 집값과 서민주거 안정에 효과가 없는 그린벨트 훼손 신도시건설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에 한정해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던 취지는 퇴색된 채 대부분 로또 민간분양주택 건설을 위해 그린벨트가 훼손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지속적으로 후퇴했다.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한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절반 이상 짓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이후 신도시건설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은 20% 내외로 후퇴했고,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과 대부분 민간 분양주택으로 채워졌다.

<표> 그린벨트 해제 2기 신도시 주택 공급유형별 가구비율

지구명	토지이용	주택 공급유형별 가구수				비고 (개발면적)
		합계	분양	공공임대 (분양전환)	국민임대	
판교 지구[1]	계	6,804(100%)	16,636(62%)	4,384(16%)	**5,784(22%)**	9,294,326㎡
	단독	2,613	2,613	-	-	
	연립주택	511	511	-	-	
	공동주택	22,414	12,246	4,384	5,784	
	주상	1,266	1,266	-	-	
위례[2] 지구	계	4,786(100%)	31,483(70%)	7,199(16%)	**6,104(14%)**	6,772,950㎡
	단독	636	636	-	-	
	연립주택	360	360	-	-	
	공동주택	40,302	26,999	7,199	6,104	
	준주거	3,067	3,067	-	-	
	복합용지	421	421	-	-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_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안(2005. 05.19 승인일 기준) 참조
2)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74호(위례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10차> 및 실시계획 변경<8차> 승인)·····

4 해외의 그린벨트 제도 운영

○ 개발제한구역제도는 도시확산과 자연녹지, 농촌지역보호를 목적으로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도시 전체에서 운영되고있으며, 미국은 경제적 효용성을 높이는 도시성장관리정책으로 사용하고있고, 호주의 수도 캔버라의 경우 도시주변 자연경관 보호만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관광 위락공간으로서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파리시 왁곽지역에 자연균형지역이라는 명칭으로 제도가 운영중이다. 러시아도 모스크바주변 폭16㎞의 그린벨트를 운영중이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운영 실패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제도가 폐지되었다. 우니라라는 현재 이대로 개발제한구역제도를 운영한다면 일본처럼 해제위기에 놓일 수 밖에 없다.

나라	명칭	지정목적	지정대상	특징
한국	개발제한구역	도시인구 집증방지 도시의 평면적 확산방지 자연녹지의 보전 국방상의 보안유지 전국토의 균형적 개발	대도시권	중앙정부주도
영국	그린벨트	도시확산방지 연담화방지 주변농촌지역보호 역사적 도시경관보전	대도시	성공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유지
캐나다	그린벨트 그린웨이	도시확산방지, 연담화방지 농촌지역보호 자연경관보전	대도시	그리웨이는 보다 유연한규제, 그린웨이로의 추세
네덜란드	그린하트	도시확산억제 교외지역보전	대도시	중과세조치 증 간접적 유인책 사용
미국	성장관리정책	도시의 연적확산방지 효율적도시형태구축 자연보호, 삶의질 향상	도시	자연보호보다는 도시성장의 경제적 효용성이 강조
호주	수도권 오픈스페이스	주변지역의 자연경관보호, 시민들을위한 관광 위락광간제공	수도 캔버라	명칭과 지정목적이 영국그린벤트와다르나 지역내 건축행위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에서 유사
뉴질랜드	특별농업지역	농경지보전과 여가 공간확보	크라이스트처치	
프랑스	자연균형지역	대도시 인구집중 시가지 외연확산제한 자연보호	파리시 외곽지역	도시계획이나 상세계획 등 간접적 매체로 규제
러시아	그린벨트	시가지 외연적 확산방지 여가공간 확보	모스크바주변	폭 16㎞의 그린벨트 설치
일본	근교지대	도시성장억제 환경보호	도쿄시	1965년 폐지, 시가화조정구역으로 개편됨

참고자료: 권용우외 3인(2004), 재 인용